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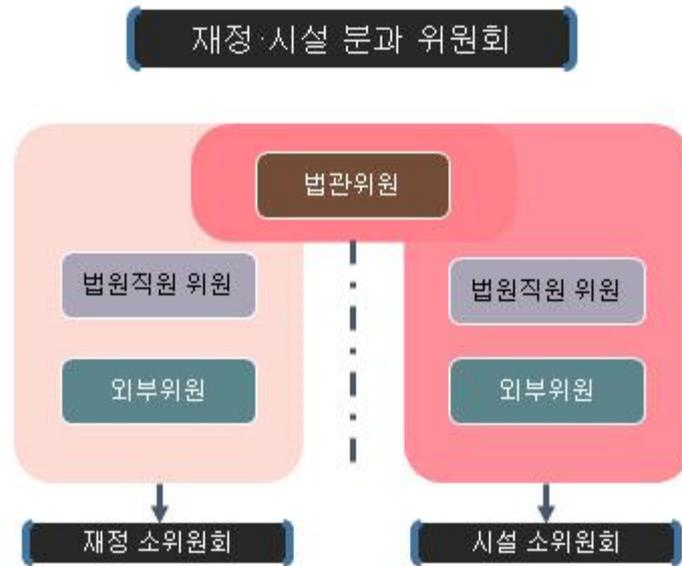
분과위원회 설치(안) 회의자료 - ① 재정·시설분과위원회

1. 재정·시설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

- ▣ 기획조정실 담당 업무 중 조직·예산 부분, 시설·기술 부분에 대하여 연구하고 검토하는 분과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
 - 조직·예산 부분, 시설·기술 부분은 사법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자문의견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세한 연구·검토가 필요함
 - 장기적으로는 조직·예산 부분 관련 분과위원회, 시설·기술 부분 관련 분과위원회로 분화될 필요성도 있음

2. 재정·시설분과위원회 설치 시 위원 구성 방안

- ▣ 위원 구성 방안 ⇨ 외부위원, 내부위원(법관, 법원공무원)
 - 외부위원 포함
 - ‘재판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‘사법행정’에 관한 주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, 비법률가인 전문가의 전문지식이나 외부의견이 필요함
 - 내부위원 중 법원공무원 포함
 - 조직·예산, 시설·기술 부분은 법관뿐만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관련된 사항임
 - 규칙 제8조제6항(“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,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”)에 따라 위원 구성 시 공개적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⇨ 신청 또는 추천의 이유(전문성, 그 동안의 경험 등)를 요청함으로써 위원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음
 - 분과위원회 내 소위원회 형태로 나누어, 아래 그림과 같이 재정 소위원회, 시설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⇨ 법관인 내부위원은 양쪽 소위원회에 모두 참여, 법원공무원인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전문 분야인 소위원회에 참여(다만, 분과위원회 내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운영세칙에서 별도의 정함이 필요함)



■ 간사 지정 필요

-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⇨ 관련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지명하되, 기획조정심의관을 간사로 지명하는 방안이나 조직심의관, 시설담당관을 공동 간사로 지명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

[이하 비공개 결정으로 삭제]